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승로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희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경우 실제 승용차와 같이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차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승용차마일리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각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산정기준의 개선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여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며,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처리 및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혜택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